

제296회 정례회
2010. 12. 14(화)

심 사 보 고 서

-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 청 북 도 의 회
건설소방위원회

「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2010. 12. 14(화)

건설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발의일자 : 2010년 10월 5일

다. 회부일자 : 2010년 10월 8일

라. 상정일자 : 2010년 12월 7일

(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균형건설국장 송영화)

가. 제안이유

- 정부의 「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」 과 「충청북도 위원회 정비계획」 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적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토록 함

나. 주요내용

-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여 구성토록 한다

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: 길 기 웅)

-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
-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존치의 필요성이 적은 안전관리위원회를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하며
-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
- 다만, 신·구조문 대비표 작성시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명시된 충청북도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7조(실무위원회)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,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 (현재)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 ~ 제6조(생략)</p> <p>제7조(실무위원회)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,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.</p> <p>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·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.</p> <p>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.</p> <p>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</p>	<p>제1조~제6조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실무위원회)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</p> <p>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p>

신 · 구조문 대비표 (검토)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 ~ 제6조(생략)</p> <p>제7조(실무위원회)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,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.</p> <p>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·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.</p> <p>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.</p> <p>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</p>	<p>제1조~제6조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실무위원회)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</p> <p>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삭 제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삭 제></p>

관련법령 발췌

□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법률

제11조 (지역위원회) ①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·조정, 지역별 안전관리업무의 협의·조정 그밖에 이 법이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소속하에 시·도 안전관리위원회(이하 “시·도위원회”라 한다)를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소속하에 시·군·구안전관리위원회(이하 “시·군·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<개정 2007.1.26>

② 시·도위원회 및 위원장은 시·도지사가 되고, 시·군·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된다.

③ 시·도위원회 및 시·군·구위원회(이하 “지역 위원회”라 한다)에 부의되는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지역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

④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